[붙임 3]

# 약정서 변경 신·구조문대비표

## 1. (신차, 중고차, 재금융 - 승용차) / 신차(상용차) 할부금융 약관

|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 |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연 24%의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연 19%의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

## 2. 신차(승용차) / 중고차(승용차) / 재금융(승용차) 할부금융 약정서상의 지연배상금율 변경

1) 전

할부금융 약정서

2016. 5. 1 개정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귀중

지연배상금율 연리 24%

2) 후

할부금융 약정서

2016. 5. 1 개정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귀중

지연배상금율 연리 19 %

## 3. 재금융(승용차) 금융리스 약정서상의 지연배상금율 변경

1) 전

지연배상금율 연리 24 %

2)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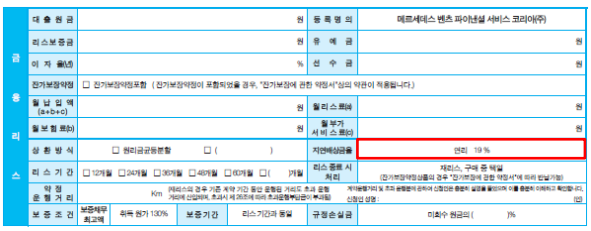
지연배상금율 연리 19 %